

● 보험가입대상

해외여행자의 신체 및 휴대품

● 보상하는 손해

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입은 신체상해, 질병, 휴대품 및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손해

1. 상해사망 – 해외여행도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는 경우

2. 상해후유장해

해외여행도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시

3. 질병사망 및 80%이상 후유장해

여행도중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지급률이 80%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시

4. 해외_상해,질병 의료비

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보상

5. 국내_상해,질병 입원의료비

보상금액: 급여 본인부담금의 90% 해당액과 비급여 80% 해당액의 합산액 보상

6. 국내_상해,질병 통원의료비_외래

공제금액: 병원규모별 1~2만원과 공제기준금액(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% 해당액과 비급여20%해당액의 합산액)중 큰 금액

7. 국내_상해,질병 통원의료비_처방조제비

공제금액: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(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10% 해당액과 비급여 20%해당액의 합산액)중 큰 금액

8. 비급여 도수치료/체외충격파치료/증식치료/주사료/자기공명영상진단

공제금액: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%중 큰 금액

9. 배상책임 – 여행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

10. 휴대품손해 – 피보험자가 여행도중에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/사용/관리의 휴대품이 파손 또는 도난으로 입은 손해를 입은 경우(분실제외)
1개 또는 1조, 1쌍에 대하여 최고 20만원 한도로 보상

11. 특별비용 – 탑승한 항공기가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, 여행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긴급 수색구조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

12. 항공기납치 – 여행도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